

국제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III(복수학위) 유의사항 안내

(2024.03.18.)

[Outbound(파견)생]

Outbound(파견)생은 해당 학기에 상대교에 파견이 된 학생으로, 행정적인 사유로 당해학기 포탈상 등록 상태이기는 하나 이는 연세대학교 재학생과 동일한 등록생의 권한(대학원 학칙 제9조)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아님

※등록생의 권한: 수강신청, 수업 수강, 졸업관련 학사절차(연구계획서 제출, 논문심사, 종합시험) 등

1. 학사

가. Outbound로 신고가 된 학생은 당해학기 수강신청,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논문 심사, 재학생만 지급 가능한 장학금 수령 등 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이 없음 (Outbound 기간 중 수강신청 된 과목은 모두 삭제될 예정)

※ 위와 관련하여 학과에서는 당해학기 Outbound(파견)생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학과에서 승인 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

가.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상대교에서 학업을 마친 후, 상대교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원 제출

※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상단메뉴 '학사안내' -> '어학/국제' -> '공동복수학위' -> '복수/공동학위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나. 본교 대체인정과목은 입학 이후에 개설된 과목만 가능

3. 장학금 지원

- 아래의 장학금 지원 기준 및 요건 숙지 요망

[Inbound생]

1. 학사

가.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원 소속교에서 이수한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원 제출

나. Inbound생 중 원 소속교 학점 이수를 위해 outbound로 신고가 된 학생의 경우, 기존 outbound(파견)생과 동일하게 대학원 학칙 제9조 등록생의 권한이 없음

※ 위와 관련하여 학과에서는 당해학기 Outbound(파견)생 신청을 한 학생들에게 철저히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학과에서 승인 불가 등의 절차를 통해 관련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2. 학점인정

가. 학생 본인의 졸업 요건 등을 숙지하여 본교 입학 이후 원 소속교에서 이수한 성적표를 근거로 지도교수 및 주임교수와 상의하여 취득학점 인정신청서 작성

※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대학원 홈페이지(<http://graduate.yonsei.ac.kr>) 상단메뉴 '학사안내' -> '어학/국제' -> '공동복수학위' -> '복수/공동학위 취득학점 인정 신청서 다운로드'

3. 장학금 지원

- 아래의 장학금 지원 기준 및 요건 숙지 요망

[공통]

1. 장학금

가. 지원사항 및 세부 지원내역: 학생별 등록금 또는 생활비 지원

구분	협약상 등록금 납부처	
	연세대	상대교
연세대→상대교 (Outbound)	- 현지 생활비 지원 - 학기당 최대 480만원 한도 (지역별 액수 차등) ※ 연세대 등록금은 학생부담	- 현지 생활비 지원 - 학기당 최대 480만원 한도 (지역별 액수 차등) ※ 상대교 등록금은 학생부담
상대교→연세대 (Inbound)	- 연세대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한도내 지원 ※ 한국 생활비는 학생부담 ※ 매학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급	- 한국 생활비 지급 - 학기당 480만원 (정액) ※ 상대교 등록금은 학생부담

※ 등록금 납부처가 상대교인 경우 본교 등록금은 대학원에서 자체 면제 처리

※ 협약서에 첫 학기 생활비를 상호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게이오대의 경우 첫 학기는 협약서 기준을 따르며 두 번째 학기에 본 기준 적용

※ 생활비의 경우, 매학기 예산 범위 내에서 심사 후 지급되므로, 직전학기 지급액과 상이할 수 있으며 최대 지원 금액 내에서 지급 예정

※ 학기 초과자는 등록금 12%만 지원하며, 과목 수강 등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개인 부담

나. 지원 기준

- 1) 양교 협약에 근거하여 상대교 체류 기간동안 생활비 지급
 - 입국하여 당해학기에 필요 증빙자료 제출 시 체류기간을 고려하여 생활비 차등 지급 예정
 - 예산 처리 가능 시점 등의 사유로 매학기 말(1월, 7월 이전)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신청 시 지급 불가
- 2) 지원학기는 상대교 체류 2번째 학기를 넘지 않음
 - 등록금 납부 유형이 상대교 납부인 경우, outbound생은 파견학기 관계없이 본교 등록금 지원
- 3) 재학 학기동안 지급하며 휴학 학기는 지급하지 않음
- 4) 생활비는 파견 학생의 상대교 체류 확인을 위한 관련 증빙자료(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및 출입국사실증명서) 확인 후 본교 학사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학생의 계좌로 지급함
- 5) 매학기 장학금 대상자 및 장학금액 결정. 해당학기 장학총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 지원순위에 의거 대학원에서 장학생 선발 가능
 - 기존장학생을 우선 지원하며 이후 학과별 균등지원, Inbound 학생 우선지원, Outbound 학생별 균등지원 순 판단
 - Outbound생 지원시 상대교 등록금 납부로 인해 본교 등록금이 면제되는 학생은

공동복수학위 생활비 장학금 지원 우선순위에서 제외

6) 일반대학원생에 한해 지급하며 의료원 및 미래캠퍼스 제외 (ex. 게이오대 복수학위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국제학대학원생은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7) 별도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내규 및 내부기준을 따름

2. 학위 수여 및 학사 기본사항

가. 상대교에서 이수한 학기는 최대 2학기까지 인정

나. 최종학기(졸업학기)는 연세대학교에서 수학